



제2921호 2023. 11. 3.(금)

www.jeonbuk.go.kr

규 칙

- 전라북도의회 규칙 제179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811호 전라북도 공무원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9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09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1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3
-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2호 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24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17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26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18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대한불교 무진종) 2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2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2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2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임진창의남당회맹단선양회) 2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7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3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3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46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40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시 군

- 전주시 고시 제2023-16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43
- 군산시 공고 제2023-20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45
- 남원시 고시 제2023-155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7
- 완주군 공고 제2023-178호 완주군계획시설(공공청사)공동주택복합단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48
- 고창군 고시 제2023-164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50
- 고창군 공고 제2023-1980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74
- 고창군 공고 제2023-2010호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 75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2023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 규칙 제179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표 5, 별표 6의2,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개정 2023. 2. 2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3)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안의 숫자는 해당계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23. 2. 2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제1항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 교통안전관리자</p>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 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료 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 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 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 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기 능 사 :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p>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p>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의공</p> <p>산업기사: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환경	일반환경	<p>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환경	수질	<p>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p> <p>기능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p>
	대기	<p>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산림</p> <p>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폐기물	<p>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산림</p> <p>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시설	도시계획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	건축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건축사
	측지	<p>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p>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시표 ()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채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전라북도 훈령 제1811호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서약 사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자수칙”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 사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09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03.

전라북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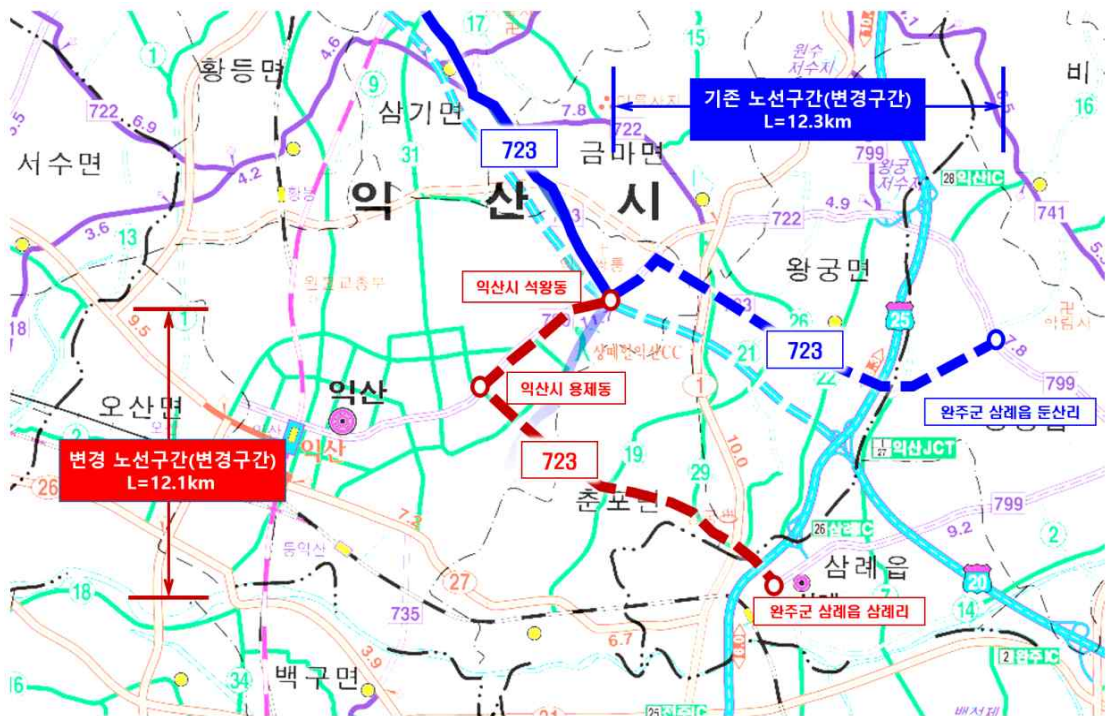
① 지방도 705호선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지방도	지방도
노선번호	제705호선	제705호선
노선명	정읍 ~ 하서	연지 ~ 하서
기점	정읍시 연지동 7-5	정읍시 연지동 7-5
종점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1052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1052
주요 통과지	정읍시 연지동, 농소동, 망제동, 덕천면, 이평면, 부안군 백산면, 부안읍, 동진면, 계화면, 하서면	정읍시 연지동, 농소동, 망제동, 덕천면, 이평면, 부안군 백산면, 부안읍, 동진면, 계화면, 하서면
총연장 (킬로미터)	53.1	47.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국도 23호 : 부안군 계화면
	연장 (킬로미터)	4.6
		국도 23호 : 부안군 계화면
		4.6



② 지방도 723호선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지방도	지방도
노선번호	제723호선	제723호선
노 선 명	삼례 ~ 장평	삼례 ~ 장평
기 점	완주군 삼례읍 둔산리 923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09-3
종 점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0-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920-1
주요 통과지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왕궁면, 석왕동, 덕기동, 금마면, 삼기면,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춘포면, 용제동, 부송동, 팔봉동, 석왕동, 덕기동, 금마면, 삼기면, 함열읍,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총연장 (킬로미터)	34.5	34.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3.2



③ 지방도 733호선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지방도	지방도	
노선번호	제733호선	제733호선	
노 선 명	구시포 ~ 아산	상하 ~ 아산	
기 점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80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80	
종 점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965	고창군 아산면 대동리 965	
주요 통과지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고창군 상하면, 무장면, 해리면, 아산면	
총연장 (킬로미터)	20.0	23.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국도 22호 : 고창군 상하면	국지도 15호 : 고창군 무장면, 해리면
	연장 (킬로미터)	3.0	3.6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311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03.

전라북도지사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지방도	지방도
노선번호	제720호선	제720호선
노 선 명	익산 ~ 금마	오산 ~ 금마
기 점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53-7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53-7
종 점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68-2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68-2
주요 통과지	익산시 오산면, 모현동, 남중동, 마동, 영등동, 신흥동, 용제동, 부송동, 팔봉동, 석왕동, 덕기동, 금마면	익산시 오산면, 모현동, 남중동, 마동, 영등동, 신흥동, 용제동, 부송동, 팔봉동, 석왕동, 덕기동, 금마면
총연장 (킬로미터)	11.7	11.7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지방도 723호선: 익산시 용제동, 부송동, 팔봉동, 석왕동 지방도 722호선: 익산시 금마면
		3.5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2호

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1. 고시명 : 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전주부성지 全州府城址

○ 지정종목 : 전라북도 기념물(제161호)

○ 명 칭 : 전주부성지

○ 시 대 : 조선시대

○ 규 모 : 17필지 (1,884.8㎡)

○ 소재지

- 북동편 구역(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6-5번지 일원)

- 북서편 구역(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

○ 소유자(관리단체) : 전주시

○ 지정 사유

- 전주부성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비롯한 관청과 조선왕실의 상징적 공간인 경기전·조경묘 등

을 지키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평지성이었다.

- 우왕14년(1388) 전라감사 최유경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영조10년(1734)에 당시 전라감사였던 조현명이 개축한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나,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는 1907년부터 1914년까지 풍남문을 제외한 모든 성벽과 성문이 헐리게 되었다.
- 성벽부재 일부는 전동성당의 기초부로 사용되었고, 성벽 자리는 도로, 주택 등이 조성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북동편 일원에서 1~2단 정도의 전주부성 기초부와 북서편에서 호선으로 돌아가는 성곽이 1~3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 전주부성지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장하는 읍성의 터로서의 현재 기초부만 남아있지만, 역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 터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의 고지도를 비롯한 『축성계초』 등을 통한 고증이 가능하며, 일제강점기 관련 지적도를 통해서도 축성 과정 및 규모, 공사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

4.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전주시청 문화유산과

- 주소: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전화 : 063-281-5356 / 전송 : 063-279-4598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17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1. 등록번호 : 제2013-1-전라북도-9호
2. 단체명칭 : 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대
3. 대 표 자 : 김 병 수
4.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14, 3층(태평동)
5. 주된사업
 - 전 대원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범죠폐방, 방범순찰
 -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우범지역 집중순찰
 -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및 계몽
 -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를 위한 활동 등
6. 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회	전주완산자율방범연합대	
대표자	장 순 식	김 병 수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9, 3층 (효자동3가)	전라북도 완산구 태평3길 14, 3층 (태평동)	

7. 최초등록연월일 : 2013. 3. 12.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18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대한불교 무진종)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3-48호
- ② 법인명 :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진종
- ③ 대표자
 - 성 명 : 박 순 덕
 - 생년월일 : 1949.8.15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년월일	설립목적	비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진종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551(자골길74)	박순덕	2023.10.25	대한불교를 계승 발전시켜 불교 지식양성과 문화교육 수행으로 새로운 비전과 세계중심의 대한 불교 발전의 기반 조성 기여 목적	

※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유산과 종무팀 박효순(280-30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2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89호	주식회사 뉴아이정보 대표 이지연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807-14	2023.10.26.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2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임진창의남당회맹단선양회)**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3-47호
- ② 법인명칭 : 사단법인 임진창의남당회맹단선양회
- ③ 대 표 자
 - 성 명 : 채규희
 - 생 년 월 일 : 59. 8. 6.
- ④ 허가연월일: 2023. 10. 24.
- ⑤ 설립목적 : 임진창의남당회맹단 92의사 유물 및 유적지 보존 관리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서적물 간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2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90호	주식회사 신명이엔지 대표 문귀근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2023.10.30.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91호	유한회사 신성시엔시 대표 김관식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안길 137-3(서흥남동)	2023.10.30.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에 의하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합병)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등록 번호	분할합병된 법인		분할합병후 존속법인		수리 일자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630202	금부 주식회사 대표 진창자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939-2	금부과워텍 주식회사 대표 김신주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학천로 994	'23.10.30.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7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허가번호 : 제2014-6450000-008-0001호
-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북청소년사랑육성회
-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87(서노송동 3층)
- 4. 대 표 자 : 이재경
- 5. 설립목적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 및 올바른 가치관 성립시키고
 참다운 인격 정립 등
- 6. 변경 허가사항

현 행	개 정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배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7. 변경 허가일자 : 2023. 10.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010-6450000-008-0052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새벽이슬
3.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동서로 222, 2층(남중동)
4. 대 표 자 : 박영권
5. 설립목적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및 청소년 정책사업 수행 등
6. 변경 허가사항 : 붙임
7. 변경 허가일자 : 2023. 10. 27

붙임**정관변경 세부 내용**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정책 및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비전이 있는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이 법인은 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p>① 청소년 육성 사업 ② 청소년 수련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③ 청소년 인권보호 활동 ④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및 시설 위·수탁 운영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1인 ③ 이사 5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④ 감사 2인</p> <p>제10조(임원의 선임)</p> <p>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상임이사)</p> <p>①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u>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및 청소년 정책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비전을 가진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사업) 이 법인은 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p>① <u>청소년 성장지원 사업</u> ② <u>청소년 수련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u> ③ <u>청소년 인권 및 보호 활동 사업</u> ④ <u>청소년 관련 사업 및 시설 위·수탁 운영 사업</u> ⑤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이사장 1인 ② 상임이사 1인 ③ <u>이사 9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u> ④ 감사 2인</p> <p>10조(임원의 선임)</p> <p>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u>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u> ③ <u>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u>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
<p>제15조(임원의 직무)</p> <p>①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p>제14조(임원의 직무)</p> <p>①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업무를 상근하여 집행하는 이사로 이사장의 업무를 대리하여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4장 총회
<p>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p> <p>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이 법인의 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p> <p>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이 법인의 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임시총회는 <u>이사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③ 총회의 소집은 <u>이사장이</u>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p>	<p>제19조(이사회 구성) <u>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u></p>
제5장 이사회	제5장 이사회
<p>제21조(이사회 소집)</p> <p>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제20조(이사회 소집)</p> <p>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u>의사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현 행	개 정
<p>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u>이사장</u>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24조(서면결의)</p> <p>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u>이사장</u>이 부의하는 사항</p> <p>제23조(서면결의)</p> <p>① <u>이사장</u>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u>이사장</u>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u>이사장</u>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운영위원회</p> <p>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① 이사장 ② 상임이사 ③ 사무처장</p> <p>제26조(운영위원회의 소집)</p> <p>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② 이 법인의 대표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 시 언제든지 소집된다.</p> <p>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p> <p>① 이 법인의 재정 운영,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 법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기타 간사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토의한다. ④ 매 분기마다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운영위원회</p> <p>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① 상임이사 ② 사무처장 ③ 위탁기관 기관장과 국장 및 부장</p> <p>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p> <p>① 운영위원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된다. ② 이 법인의 상임이사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 시 언제든지 소집된다.</p> <p>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p> <p>① 이 법인의 재정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자문과 전문적인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③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p>

현 행	개 정
제7장 간사회	제7장 전문위원회
<p>제28조(간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p> <p>① 실무간사 : 실무지도자 2급 과정을 이수하고 정기교육 지속 참여자</p> <p>② 인턴간사 : 실무지도자 3급 과정을 이수하고 정기교육 지속 참여자</p> <p>③ 협력간사 : 이 법인에 소속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장인 실무지도자</p> <p>제29조(간사회의 소집)</p> <p>① 간사회의 소집은 이 법인의 대표 또는 해당하는 팀장이 소집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토의한다.</p> <p>③ 간사회는 자체 회의를 갖고 건의사항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p>	<p>제2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①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 성장지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들로, 30인 이하로 구성한다.</p> <p>제28조(전문위원회의 소집)</p> <p>① 전문위원회의 소집은 연 6회, 격월로 소집한다.</p> <p>② 이 법인의 상임이사 또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의 요구 시 언제든지 소집된다.</p> <p>제29조(전문위원회의 기능)</p> <p>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이루어가기 위한 자문과 전문적인 협업을 한다.</p>
제9장 사무부서	제9장 사무부서
<p>제37조(사무처)</p> <p>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에 상근직원인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p>	<p>제37조(사무처)</p> <p>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에 상근직원인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03일

1. 등록번호 : 제 2017-1-전라북도-20호
2. 단체명칭 : 익산시 여성농민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익산시농업인회관 2층
4. 대표자
 - 성 명 : 신 향 식
 - 생년월일 : 1964. 9. 20.
5. 주된 사업
 - 여성농업인 권익활동
 - 여성농업인 정책연구·조사·홍보·교육
6. 변경 내용 : 대표자 (당초) 김양순 → (변경) 신향식
7. 허가(변경)일자 : 2023. 10. 30.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46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1월 3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례안 (9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영조 주무관, 280-2224)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강혜선 주무관, 280-423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 김민정 주무관, 280-303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제도과, 정현민 주무관, 280-2785)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정홍철 주무관, 280-2416)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산유통과, 박선미 주무관, 280-4625)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정고은 주무관, 280-2649)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관실 (감사총괄팀 오규진 주무관 280-2068)
동의안 (14건)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김명화 주무관 280-3709)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박재용 주무관 280-4162)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정진호 주무관 280-378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임은주 주무관, 280-4326)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창업지원과 정경화 주무관 280-287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장힘찬 주무관 280-282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이유경 주무관 280-4727)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국 (주력산업과, 여미지 주무관 280-35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권누리 주무관 280-393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박재춘 주무관, 280-326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신희운 주무관, 280-4168)

전주시 고시 제2023-16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66-2188(1966. 2. 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2-71(2022. 4. 29.)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변경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전 주 시 장

인가작성의 요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
 - 명 칭 : 서신동 전릉로 가로망 확충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59m²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초)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과 같음.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소계				59	59					
1	완산구 서신동	21	6	도	7	7	최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서신동 22			
2	완산구 서신동	20	34	도	5	5	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완산구 서신동	20	37	대	30	30	이00	경기도 군포시 당동 767-3 2층	전주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95-15	근정 당권
4	완산구 서신동	20	35	도	9	9	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완산구 서신동	6	71	도	8	8	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군산시 공고 제2023 - 20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 외 1개노선)사업
 - 2)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 2-16 : L= 94m, B=3.0m
 - 2) 중로 2-63 : L=133m, B=3.0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주)은성종합개발(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0.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중로2-1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1	3	전	13	1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2	지곡동	산135	9	임	2	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3	지곡동	산135	11	임	20	20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4	지곡동	산135	13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5	지곡동	산135	15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6	지곡동	산135	17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7	지곡동	산135	19	임	18	1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8	지곡동	산139	3	임	25	25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9	지곡동	산140	36	임	101	10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계	9필지				239	239						

2) 중로2-6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3	3	대	11	1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2	지곡동	396	2	대	59	5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3	지곡동	396	15	도	6	6	군산시					
4	지곡동	396	4	전	47	4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5	지곡동	396	18	도	2	2	국(국토교통부)					
6	지곡동	396	20	도	14	14	군산시					
7	지곡동	396	21	도	3	3	두말*	군산시 지*동 395				
8	지곡동	414	6	전	64	6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9	지곡동	416	6	유	68	6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0	지곡동	416	8	도	1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지곡동	417	5	전	33	3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2	지곡동	417	6	도	3	3	군산시					
13	지곡동	418	1	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4	지곡동	418	13	전	1	1	군산시					
15	지곡동	산115	7	임	27	2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6	지곡동	산117	4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계	16필지				383	383						

남원시 고시 제2023-155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인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11월 3일

I.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II.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202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신정동 445번지

- 사업의 규모 : 20,154㎡

건축면적 5,973.92㎡ → 7,748.4㎡ (증 1,774.48㎡)

건축연면적 6,356.41㎡ → 8,380.55㎡ (증 2,024.14㎡)

III.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전북 남원시 남문로 396-1

IV.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4. 06. 30.

V.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VI.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위 치 (신정동)	지목	지적면적 (㎡)	권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20,154	20,154					
1	445	대	20,154	20,154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전북 남원시 남문로 396-1			

완주군 공고 제2023-1703호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봉동읍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봉동읍행정복지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11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봉동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4,5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12. 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9. 열람 기간 내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필지					13,346	4,561.0						
1	봉동	장기	1172-8	답	1,959	1,286	완주군					
2	봉동	장기	1172-9	답	2,000	1,311	홍직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82번길 55, 103동 505호				
3	봉동	장기	1172-14	답	1,071	924	홍직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82번길 55, 103동 505호				
4	봉동	장기	1174-14	답	407	99	국(농림축 산식품부)					
5	봉동	장기	1174-15	답	28	28	국(농림축 산식품부)					
6	봉동	장기	1189-49	구	7,881	913	국(농림축 산식품부)					

고창군 고시 제2023-164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2023.03.0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전라북도 고시 제2023-294호(2023.10.0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고창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기업입주에 대비하여 직·주 근접 실현 및 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공간 마련
- 고창군 도시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연계성에 근거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개발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 면 적 : 151,776㎡

4. 시행자

- 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장동)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 2025. 12. 31.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고창 덕산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1,776	-	151,776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25,471	125,471	82.6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증) 14,035	14,035	9.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111,436	111,436	73.4	
녹지 지역	소 계	151,776	감) 125,471	26,305	17.4	
	자연녹지지역	151,776	감) 125,471	26,305	17.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소 계		-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35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11,436	250%이하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고창 덕산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1,776	-	151,776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17	3,285 (1,661)	39,732 (24,539)	1	422	9,660	5	635 (436)	8,185 (6,075)	11	2,228 (803)	21,887 (8,804)	
일반 도로	계	13	3,222 (1,598)	39,422 (24,229)	1	422	9,660	5	635 (436)	8,185 (6,075)	7	2,165 (740)	21,577 (8,494)
	중로	8	2,709 (1,284)	35,701 (22,618)	1	422	9,660	3	375	5,631	4	1,912 (487)	20,410 (7,327)
	소로	5	513 (314)	3,721 (1,611)	-	-	-	2	260 (61)	2,554 (444)	3	253	1,167
보행자 전용 도로	계	4	63	310	-	-	-	-	-	-	4	63	310
	소로	4	63	310	-	-	-	-	-	-	4	63	310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2	12	보조 간선 도로	1,221	광장18호 고창읍 읍내리 871-2	대로3-103 고창읍 덕산리 207-6	일반 도로	남초등학교	건설고 제 30호 68.01.18.	
변경	중로	3	102	12~15 (3)	보조 간선 도로	1,221 (170)	광장18호 고창읍 읍내리 871-2	대로3-103 고창읍 덕산리 207-6	일반 도로	남초등학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0	8	국지 도로	199	중로3-102 고창읍 덕산리 215-3	학교6호 고창읍 덕산리 39-6	일반 도로	고창 보건소	전북고 제134호 85.09.17.	
변경	소로	2	140	8~11 (3)	국지 도로	199	중로3-102 고창읍 덕산리 215-3	학교6호 고창읍 덕산리 39-6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	21~24	집산 도로	422	대로3-103 고창읍 덕산리 189-11	중로3-102 고창읍 덕산리 207-2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54	고창읍 덕산리 120-3	고창읍 덕산리 184-1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71	고창읍 덕산리 208-11	소로3-2 고창읍 덕산리 34-6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2	3	15	국지 도로	150	고창읍 덕산리 208-3	소로2-140 고창읍 덕산리 209-1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06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119-3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119-3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7	중로3-3 고창읍 덕산리 119-3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120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54	대로3-103 고창읍 덕산리 116-1	고창읍 덕산리 산48-2	일반 도로		금 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61	소로2-140 고창읍 덕산리 산39-6	고창읍 덕산리 17-3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1	4	국지 도로	201	중로3-3 고창읍 덕산리 129	고창읍 덕산리 511-1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2	5	국지 도로	15	소로3-3 고창읍 덕산리 34-6	학교6 고창읍 덕산리 210-15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3	5	국지 도로	37	중로2-2 고창읍 덕산리 34-8	학교6 고창읍 덕산리 산37-2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4	5	특수 도로	11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511	소공원2 고창읍 덕산리 124	보행자 전용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5	5	특수 도로	11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129-2	완충녹지2 고창읍 덕산리 511	보행자 전용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6	5	특수 도로	11	중로3-1 고창읍 덕산리 120	소공원2 고창읍 덕산리 120	보행자 전용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7	5	특수 도로	30	중로2-3 고창읍 덕산리 212-3	중로3-102 고창읍 덕산리 212-3	보행자 전용 도로		금 회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02	중로3-102	·B = 12m → 12~15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2-140	소로2-140	·B = 8m → 8~1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1-1	·B = 21~24m, L = 422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1	·B = 15m, L = 54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2	·B = 15m, L = 17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2-3	·B = 15m, L = 150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1	·B = 12m, L = 206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2	·B = 12m, L = 27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3	·B = 12m, L = 254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2-1	·B = 8m, L = 6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1	·B = 4m, L = 20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2	·B = 5m, L = 15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3	·B = 5m, L = 37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4	·B = 5m, L = 1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5	·B = 5m, L = 1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6	·B = 5m, L = 11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7	·B = 5m, L = 30m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	2개소	-	-	증) 1,836	1,836	-	
신설	1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188-1 일원	-	증) 937	937	금 회	
신설	2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	증) 899	899	금 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A = 937m ²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2	주차장	·A = 899m ²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	4개소	-	-	-	증) 7,077	7,077		
신설	1	녹 지	완충 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 원	-	증) 408	408	금 회	
신설	2	녹 지	완충 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 원	-	증) 1,498	1,498	금 회	
신설	1	녹 지	경관 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 원	-	증) 1,029	1,029	금 회	
신설	2	녹 지	경관 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 원	-	증) 4,142	4,142	금 회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A = 408㎡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A = 1,498㎡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A = 1,029㎡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A = 4,142㎡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3개소	-	-	-	증) 21,709	21,709		
신설	1	공원	근린 공원	고창읍 덕산리 176 일원	-	증) 11,874	11,874	금 회	
신설	1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	증) 8,306	8,306	금 회	저류시설1 중복결정
신설	2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208-3 일원	-	증) 1,529	1,529	금 회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A = 11,874㎡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1	소공원	·A = 8,306㎡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소공원 신설
2	소공원	·A = 1,529㎡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소공원 신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가스공급설비	고창읍 덕산리 171-6 일원	-	증) 18	18	금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가스공급설비	A = 18m ²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가스공급설비 신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공공청사	-	고창읍 덕산리 189-5 일원	-	증) 6,538	6,538	금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공공청사	A = 6,538m ²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5) 방재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	증) 3,000	3,000	금 회	소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저류시설	A = 3,000m ²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저류시설 신설

6)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1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11,874		시설율 26.0 %
기 반 시 설	도 로 · 광 장	1,716		
휴 양 시 설	휴 게 쉼 터	571		
운 동 시 설	체 력 단 련 장	248		
편 의 시 설	주 차 장	558		
기 타	녹 지	8,781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494.1	1,374				
소로	3류	1	3.0	380.7	1,142	진입로	남측경계	북서측경계	
소로	3류	2	2.0	67.5	135	연결로	소로3-1	체력단련장3	
소로	3류	3	4.5	6.2	28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1	
소로	3류	4	1.5	20.7	31	연결로	소로3-1	광장	
소로	3류	5	2.0	19.0	38	연결로	주차장1	소로3-1	

☑ 시설조사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물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 면적	
계		1호 근린공원	11,874	74개소				시설율 26.0%
시설 총계	소계		3,093	57개소				
	소계		1,716	9개소				
기 반 시 설	1	도로	1,374	5노선				
	2	광장	342	9개소				
	2-1	진입광장1	12	-				
	2-2	진입광장2	213	-				
	2-3	진입광장3	10	-				
	2-4	광장	107	-				
	①	등의자	-	6개소				
	②	이동식볼라드	-	3개소				
휴 양 시 설	소계		571	19개소				
	3	휴게쉼터	571	-				
	3-1	휴게쉼터1	49	-				
	3-2	휴게쉼터2	25	-				
	3-3	휴게쉼터3	45	-				
	3-4	휴게쉼터4	76	-				
	3-5	휴게쉼터5	355	-				
	3-6	휴게쉼터6	21	-				
①	등의자	-	19개소					
운 동 시 설	소계		248	9개소				
	4	체력단련장	248	9개소				
	4-1	체력단련장1	81	-				
	4-2	체력단련장2	94	-				
	4-3	체력단련장3	73	-				
③	생활체육시설	-	9개소					
편 의 시 설	소계		558	20개소				
	5	주차장	558	20개소				
	5-1	주차장1	277	-				
	5-2	주차장2	281	-				
④	카스토퍼	-	20개소					
기 타	소계		8,781	17개소				
	6	녹지	8,781	17개소				
	⑤	파라솔	-	5개소				
	⑥	앉음벽	-	6개소				
	⑦	썬쉐이드파고라	-	5개소				
⑧	웬스	-	1개소					

나) 1호 소공원 시설결정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8,306	-	시설율 19.9 %
기 반 시 설	도 로 / 광 장	1,578	-	
운 동 시 설	체 력 단 련 장	82	-	
기 타	녹 지	6,646	-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512.1	1,521				
소로	3류	1	2.0	24.0	48	진입로	북측경계	소로3-2	
소로	3류	2	2.0	32.0	64	진입로	북동측경계	소로3-3	
소로	3류	3	5.0	30.6	153	진입로	보행자도로	북서측경계	
소로	3류	4	1.8	84.4	152	연결로	소로3-7	소로3-3	
소로	3류	5	3.0	47.3	142	연결로	소로3-6	소로3-4	
소로	3류	6	3.0	36.3	109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4	
소로	3류	7	3.0	230.7	692	연결로	소로3-8	소로3-8	
소로	3류	8	6.0	26.8	161	연결로	진입광장	저류지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m ²)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 면적	
계		1호 소공원	8,306	34개소				시설율 19.9%
시 설 총계		소계	1,660	34개소				
기 반 시 설		소계	1,578	-				
	1	도로	1,521	8노선				
	2	광장	57	-				
운 동 시 설		소계	82	4개소				
	3	체력단련장	82	4개소				
		① 생활체육시설	-	3개소				
		② 앉음벽	-	1개소				
기 타		소계	6,646	30개소				
	4	녹지	6,646	30개소				
		③ 쉼쉼이드파고라	-	2개소				
		④ 파라솔	-	2개소				
		⑤ 등 의 자	-	26개소				

다) 2호 소공원 시설결정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m ²)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1,529	-	시설율 16.0 %
기 반 시 설	도 로 · 광 장	232	-	
휴 양 시 설	휴 게 쉽 터	12	-	
기 타	녹 지	1,285	-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64.3	148.0				
소로	3류	1	2.3	64.3	148.0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1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호 소공원	1,529	24개소				시설율 16.0%
시설총계	소계		244	24개소				
	소계		232	8개소				
기반시설	1	도로	148	1노선				
	2	광장	84	8개소				
		2-1	진입광장1	44	-			
		2-2	진입광장2	40	-			
		①	파고라	-	2개소			
		②	평의자	-	6개소			
휴양시설	소계		12	6개소				
	3	휴게쉼터	12	6개소				
		3-1	휴게쉼터1	4	-			
		3-2	휴게쉼터2	4	-			
		3-3	휴게쉼터3	4	-			
	③	등의자	-	6개소				
기타	소계		1,285	10개소				
	4	녹지	1,285	10개소				
		③	등의자	-	4개소			
		④	미스트열주	-	6개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6,180	-	-	6,180	
단독	단독1	582	-1	고창읍 덕산리 120 일원	291	• 획지의 분할 및 합 병 불 허
			-2	고창읍 덕산리 120 일원	291	
	단독2	712	-1	고창읍 덕산리 120 일원	382	
			-2	고창읍 덕산리 120 일원	330	
	단독3	1,166	-1	고창읍 덕산리 123 일원	391	
			-2	고창읍 덕산리 123 일원	391	
			-3	고창읍 덕산리 123 일원	384	
	단독4	1,502	-1	고창읍 덕산리 122 일원	265	
			-2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257	
			-3	고창읍 덕산리 122 일원	323	
			-4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329	
			-5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328	
	단독5	558	-1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282	
			-2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276	
	단독6	1,660	-1	고창읍 덕산리 124 일원	330	
			-2	고창읍 덕산리 124 일원	330	
			-3	고창읍 덕산리 129-1 일원	330	
			-4	고창읍 덕산리 129-1 일원	330	
			-5	고창읍 덕산리 129 일원	340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69,085	-	-	69,085	
공동	공동1	25,016	-1	고창읍 덕산리 209-1 일원	25,016	• 획지의 분할 및 합 병 불 허
	공동2	44,069	-1	고창읍 덕산리 181 일원	13,818	
			-2	고창읍 덕산리 186 일원	30,251	

다)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6,288	-	-	6,288	
준주거	준주거1	3,010	-1	고창읍 덕산리 115 일원	982	• 분할 및 합병 불허. 단, 연결한 1개 획지와의 합병은 허용하며, 합병된 획지에 한하여 합병 전 획지선으로 분할은 가능
			-2	고창읍 덕산리 189-11 일원	1,010	
			-3	고창읍 덕산리 120 일원	1,018	
	준주거2	1,375	-1	고창읍 덕산리 207-7 일원	676	
			-2	고창읍 덕산리 208-1 일원	699	
	준주거3	1,903	-1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595	
			-2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687	
			-3	고창읍 덕산리 214 일원	621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업무	업무	8,161	-1	고창읍 덕산리 189-6 일원	8,161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1회에 한하여 허용. 단, 분할 후 맹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마)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공공	공공	6,538	-1	고창읍 덕산리 189-5 일원	6,53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바) 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커뮤	커뮤	345	-1	고창읍 덕산리 119-3 일원	34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사)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	1,836	-	-	1,836	
주차장	주1	937	-1	고창읍 덕산리 188-1 일원	937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주2	899	-2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899	

아) 가스공급설비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가스	가스	18	-1	고창읍 덕산리 171-6 일원	1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2) 건축물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 1~6	단독 1~6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필로티 구조 포함) 	
		1획지당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가구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변에서 1m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 1~2	공동 1~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층 이하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10층 이하(최고높이 32m미만)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 (㎡)</th> <th>용적률 (%)</th> <th>전용면적 (㎡)</th> <th>평균주택 규모 (㎡)</th> <th>호수 (호)</th> <th>인구 (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69,085</td> <td>-</td> <td>-</td> <td>-</td> <td>1,196</td> <td>2,513</td> <td></td> </tr> <tr> <td rowspan="2">공동1</td> <td>분 양</td> <td>25,016</td> <td>200이하</td> <td>60~85</td> <td>115</td> <td>363</td> <td>763</td> </tr> <tr> <td>임 대</td> <td>13,818</td> <td>200이하</td> <td>60이하</td> <td>90</td> <td>307</td> <td>645</td> </tr> <tr> <td rowspan="2">공동2</td> <td>분 양</td> <td>30,251</td> <td>200이하</td> <td>60~85</td> <td>115</td> <td>526</td> <td>1,105</td> </tr> </tbody> </table> <p>주1) 평균주택규모는 호수 및 계획인구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주2) 호수 및 인구계획은 대지면적, 용적률, 평균주택규모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p>								구 분	면적 (㎡)	용적률 (%)	전용면적 (㎡)	평균주택 규모 (㎡)	호수 (호)	인구 (인)	비고	합 계	69,085	-	-	-	1,196	2,513		공동1	분 양	25,016	200이하	60~85	115	363	763	임 대	13,818	200이하	60이하	90	307	645	공동2	분 양	30,251	200이하	60~85	115	526	1,105
		구 분	면적 (㎡)	용적률 (%)	전용면적 (㎡)	평균주택 규모 (㎡)	호수 (호)	인구 (인)	비고																																								
		합 계	69,085	-	-	-	1,196	2,513																																									
		공동1	분 양	25,016	200이하	60~85	115	363	763																																								
			임 대	13,818	200이하	60이하	90	307	645																																								
공동2	분 양	30,251	200이하	60~85	115	526	1,105																																										
	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도로변 6m 이상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공공조경 폭 : 10m 이상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다)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1~4	준주거 1~4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전면 도로(중거리당산로)변 2m 후면 도로변 1m이상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사무소.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에 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바닥면적 합계의 10%미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전면 도로(중거리당산로)변 5m, 후면 도로변 1m이상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마)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	공공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및 제95조 제2항에 따른 편익시설 ※ 단, 공공청사 편익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시설을 허용하며, 건축 바닥면적 합계의 30%미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전면 도로(중거리당산로)변 5m, 후면 도로변 1m이상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바) 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커뮤	커뮤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사 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필로티 구조 포함)	
		배치·형태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건축물의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도로변에서 1m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아)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	주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 1층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전면 도로(중거리당산로)변 2m, 후면 도로변 1m이상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자) 가스공급설비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스	가스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지역정압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1층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 : 도로변에서 1m • 그 외의 사항은 「고창군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름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른다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전용주차구역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
충전시설	공동주택 공공청사 주차장	• 전용주차구역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고, 전체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업무시설	• 전용주차구역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고, 전체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기타사항	• 계획내용 이외의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준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 공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6)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고창군 공고 제2023-1980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창 군 수

2023년 11월 03일

1.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	성산 주차장	고창읍 읍내리 648번지 일원	-	증)1,707	1,707	금회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00	성산 주차장	신설 면적 : 1,707㎡	고창문화터미널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 터미널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최초 결정

다. 관계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다. 의견제출 :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571) 및 군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23-2010호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1-989호로 공람·공고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고창군 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

나.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일원

다. 면 적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441	-	110,441	100.0	
관 리 지 역	69,173	증)41,268	110,441	100.0	
계 획 관 리 지 역	15,123	증)95,318	110,441	100.0	
보 전 관 리 지 역	53,495	감)53,495	-	-	
생 산 관 리 지 역	555	감)555	-	-	
농 립 지 역	41,268	감)41,268	-	-	

2) 군계획시설(공원)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	역사공원	아산면용계리 산22-1번지 일원	-	증)108,516	108,516	“금회”	

3)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13	10-12	국지도로	167	용계리 산53-3	용계리 212	일반도로	-	“금회”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전북도보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건설도시과

3.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다. 제출장소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건설도시과

4. 관련도서 : 실음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문화예술과(063-560-2955) 및 건설도시과(063-560-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